	정보지원센터규정	제 정 일	2021. 1. 1
		개 정 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정보지원센터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학술 및 전산 관련 정보의 제공과 관리 등 대학 내 정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정보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이라 함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조직) ① 센터는 본교 부속기관으로 두며,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를 둔다.

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, 소속 부서에는 과장을 둔다.

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.

제 3조 (사업) 센터의 학술정보과와 전산정보과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① 학술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업무
2. 자료의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업무
3. 자료의 등록, 폐기 및 제적 등 장서관리에 관한 업무
4. 자료대출 및 반납업무
5. 연속간행물 및 상호대차에 관한 업무
6. 도서관 이용자 교육에 관한 업무
7. 열람실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업무
8. 도서관 시설 관리 유지에 관한 업무
9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② 전산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 정보화 기획 및 실행
2.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
3. 업무용 솔루션 도입 및 운영
4. 각종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
5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
6. 서버 및 보안장비 관리
7. 네트워크 및 무선랜 운영 및 유지관리
8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

제 4조 (운영) 센터 소속 부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 5조 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속 부서별로 따로 정한다.

제 6조 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